

FAQ

1.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
Q.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? 신청서 작성이 막막합니다.

- 본 공모사업은 전시, 공연 등 단순히 창작제작 비용지원이 아니라, 현재 하고 있는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앞으로 지원자가 미래에 어떻게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것인지, 또는 예술인의 자질이나 역량을 향상시켜서 개인 예술인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하는 장려금 성격을 가진 공모 사업입니다.
- 따라서 신청서에 작성하실 수 있는 예술활동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. 신청예술인의 자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려가며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.

(작성예시)

- ①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립준비금으로 재료를 사서 그림을 그리겠다. (X)
- ② 재료 구입 후 그림을 완성하여 아트마켓 진출 혹은 아트상품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. (O)
- ③ 환경개선을 위해 화가, 작가, 무용수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.(O)
- ④ 곡 제작을 위해 장비를 구입하고, 뮤직션을 섭외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하겠다. (O)

Q. 국가문화예술시스템(NCAS)에서 신청개요 작성할 때 [신청사업명]은 무엇을 적나요?

- 신청인이 수행할 실제 사업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(작성예시)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(X) / 유산술의 앨범발매 프로젝트 (O)

Q. 활동지역은 경기도에서만 가능한가요?

- 아닙니다. 활동지역 제한은 없으며 국내·외 등 어디서 어떻게 활동 할 것인지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Q. 경기도에 주소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?

- 불가능합니다. 공고일(2020.02.20.) 이전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내여야 합니다. (주민등록초본 증명)
단, 경기도로 이주한지 1년 이내(2019.2.20.~2020.2.19.)인 신청인은 신청서 내의 [선택1] 거주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. 확인서는 심의과정에 반영하게 됩니다.

Q. 나이 제한이 있나요?

- 신청예술인의 나이는 만19세~ 34세의 청년예술인(2020.01.01.기준/ 1985.01.01. ~ 2000.12.31.)만 가능합니다.

Q.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- 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(창작디딤돌)과 동시 지원은 가능합니다.
- 단, 동시 선정될 경우,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여 한 가지 사업은 사업 포기 각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은 평생 1번만 지급되오니,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

- 다.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 될 경우 지원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
- 2020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으로 선정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도 지원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Q.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지원사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동시 지원 가능하며, 동시 선정 또한 가능합니다.

Q. 분야 선택에 고민이 있습니다. 저는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하나요?

-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[붙임1]<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>는 분야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예술인복지법의 근거를 따른 세부기준입니다. 자료를 살펴보고 본인의 예술활동과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Q. [붙임1]<예술 활동 증명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>의 활동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
- 해당 서류는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. 따라서 [붙임1]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현재까지 예술활동을 펼쳐왔다면 본 사업의 지원대상인 '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인'으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 대상은 예술분야에서 창작, 실연,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오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.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, 예술인으로써 자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?

-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, 자립지원금은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위한 '장려금' 성격의 준비금이기 때문입니다.

Q. 정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 영수증도 필요한가요?

- 선정예술인은 교부 이후 <활동결과보고서(정산서)>를 작성하고, 필수 제출자료인 300만원 이체확인증, 통장사본, 예술자립활동 증빙자료만 제출하게 됩니다.
- 300만원을 쓴 영수증, 내역은 별도 요청하지 않습니다. 단, 지원금 정산을 간소화한 만큼 <활동결과보고서>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후 증빙자료 불충분, 서류 미비 등의 심사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, 영수증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은 보관을 부탁드립니다.

Q. 공공예술사업,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. 또한 예술인지원센터는 이전(2019년)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이 주도하는 공공예술사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.
- 단 공공예술사업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단체 아이디어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에 가입하여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.

Q. 예술인 등록이 뭔가요?

-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는 향후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지원 신청서 하단의 예술인 등록에 동의를 해주시면, 신청예술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DB구축에 활용됩니다.

2. 공공예술사업 •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
Q. 공공예술사업과 창작공간 임차료가 동시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.

Q. 사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?

- 공고일(2020.2.20.) 전 설립된 사업체는 모두 지원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체를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. 1인 예술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, 공간대여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(공유사무실, 대여전문연습실 등)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Q. 국가문화예술시스템(NCAS)에서 신청개요 작성할 때 '신청사업명'은 무엇을 적나요?

- 신청인이 수행할 실제 사업명(창작공간명)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(예시) 공공예술사업 지원 (X) / 신나는 예술여행 (O)

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(X) / 창작공간명 (O)

Q. [공공예술사업] 공공예술사업이 무엇인가요?

- 공공예술사업이란 해당 단체가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, 공공성이 높은 사회참여형 사업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페스티벌처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, 시군 특화 프로젝트,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, 이에 따라 상권에 보탬이 되고 공동체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예술인지원센터는 공공예술사업을 통해 단체에게 있어 어떤 활동을 넘어 선 마중물,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자세한 것은 공고문의 <세부지원 방향>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
Q. [공공예술사업] 왜 사업자를 우대하나요?

- 공공예술사업은 예술기반단체가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고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. 지원 자격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 (전문예술단체·법인, 사업자, 협동조합 등)로 두고 있습니다. 비영리/고유번호증으로 증빙 가능한 사업체의 경우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해당 부분은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Q. [공공예술사업] 대표자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?

- 대표자(개인)에게 사례비로의 인건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해당 사업에의 참여 등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를 했을 경우, 기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은 가능합니다.

Q. [공공예술사업] 수익 창출 사업도 가능한가요?

- 사업 중 교육/공연/티케팅 등의 어떠한 이익 창출이 가능합니다. 또한 센터(재단)에 그 수익을 환원할 필요도 없습니다. 다만 수익이 발생했다면 향후 정산 시 그 기간이나 금액 등 이에 대한 결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.

Q. [공공예술사업] 사업계획서 중 자부담금이 필수인가요?

- 유사한 지원 공모 사업의 경우 단체 대표의 자부담(자체조달자금)이 10% 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공공예술사업은 예술단체가 사업성을 갖거나 수익성을 내서 후에 예술인이나 그 단체가 자립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며, 자부담금에 대해 의무 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

Q. [공공예술사업] 상호협력협약서는 의무로 제출해야 하나요?

- 신청서 [1-5]의 '지자체 및 기업 등 상호협력협약서 사본'은 해당자에 한하며, 의무 제출사항이 아닙니다. 제출 시 해당 부분이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의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.

Q. [창작공간임차료] 임대차계약이 구두로 연장되어 진행 중입니다.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
-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(묵시적 갱신) 중일 경우에도 지원 당시 그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임차인과 함께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증, 재계약 서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'공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음'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